



TM

산림인증

KFCC/00-001

한국산림인증제도 단체산림인증 가이드



한국산림인증위원회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전화 : 02-6393-2758

팩스 : 02-6393-2718

홈페이지 : <https://kfcc.kofpi.or.kr>

문 서 명 : 한국산림인증제도 단체산림인증 가이드

문서번호 : KFCC-A-01

승 인 :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승 인 일 : 2015. 12. 22.

목 차

1. 적용범위	1
2. 참조 표준	1
3. 용어 및 정의	1
4. 단체 산립인증	3
5. 단체 조직 책임	3
5.1 일반 사항	3
5.2 단체 조직의 기능과 책임	4
6. 단체 구성원 책임	6
6.1 일반 사항	6
6.2 단체 구성원의 기능과 책임	6

한국산림인증제도 단체산림인증 가이드

제 정 2015. 12. 22.
개 정 2017. 12. 22.

1.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단체 산림경영을 포함한 하나의 인증서에서 다수의 산림 소유자/관리자들의 인증을 인정하는 산림인증제도의 일반적 요구사항을 정의하였다. 단체 산림경영인증은 개인 산림 소유자/관리자들을 포함하여 특정 경영 구조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산림인증서의 개인 산림소유주/관리자들이 샘플링기반의 인증 활동이 충분한 신뢰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산림경영표준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참조 표준

PEFC ST 1002:2010 *Group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Requirements.*

ISO/IEC Guide 2:1996 *Standardis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3. 용어 및 정의

3.1 인증 지역

단체 산림인증서에 포함되는 인증된 산림 지역을 의미한다.

3.2 단체 조직

단체 구성원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인증된 지역의 산림경영이 한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3.3 단체 산림인증

단체 조직이 관리하는 인증된 산림지역에서 실시된 산림경영 인증을 의미한다.

3.4 단체 산림인증서

단체 조직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3.4 단체 관리자

단체 규칙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대표자로, 단체 산림경영인증을 위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3.6 단체 구성원

단체 산림인증서에 포함되는 명확하게 정의된 산림 지역에서 산림을 관리할 법적 권리를 가지며 그 면적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표준의 요구사항을 이행 할 능력이 있는 산림 소유자/관리자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3.7 단체 산림인증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

단체 산림인증이 부여된 이후에 단체조직이 산림인증에 포함되며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개인 구성원에게 발행되는 문서를 의미한다.

3.8 산림경영협업체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조직된 협동단체이다.

3.9 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 소유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 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3.10 영농회사법인

기업적 산림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3.11 산림조합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설립된 산림소유자와 임업종사자의 자주적 협동조직이다(「산림조합법」 제1조).

3.12 산림경영 전문회사

산림경영에 관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3.13 산림경영 전문협회 또는 비정부 조직(NGO)

임업에 관한 새로운 정보 기술보급,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도모 등을 위한 전문 협회와 비정부 조직을 의미한다.

4. 단체산림인증

- (1) 단체산림인증은 KFCC-S-01 산림경영인증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 (2) 단체조직은 다음 중의 하나의 형태일 수 있으나, 여기에 국한하지 않는다.
 - a) 산림경영협업체
 - b) 선도산림경영단지
 - c) 영농회사법인
 - d) 산림조합
 - e) 산림경영 전문회사
 - g) 산림경영 전문협회 또는 비정부 조직(NGO)
 - h) 기타 정부 조직 또는 정부가 승인한 산림경영 전문단체

5. 단체 조직의 책임

5.1 일반 요구사항

- (1) 단체 조직은 모든 단체 구성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기관 및 요구되는 기타 기관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 조직은 단체 산림경영인증을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단체 관리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2) 단체 조직은 단체 구성원과 단체 관리자가 단체 산림경영인증 절차를 관리하고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여야 한다.
- (3) 단체 조직은 단체 구성원의 참여 및 탈퇴에 관한 절차를 제공해야한다.
- (4) 단체 조직은 단체 구성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체의 다양한 정책, 절차 및 규칙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5.2 단체 조직의 기능과 책임

(1) 단체 조직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산림경영표준과 기타 적용 가능한 산림인증제도의 요구사항에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b) 단체 조직의 경영을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c) 다음의 기록을 보관해야한다
 - 산림경영표준, 그리고 기타 적용 가능한 산림인증제도의 요구사항에 따른 단체 조직 그리고 단체 구성원들의 적합성
 - 계약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모든 단체 구성원의 산림 재산 그리고 면적
 - 인증 면적
 - 내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이행과 시정 및 예방조치
- d) 산림경영표준에 모든 구성원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동의서를 기반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관련성을 수립하여야 한다.
- e) 모든 구성원에게 산림경영표준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산림인증제도의 요구사항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 f) 단체 구성원들의 법규 및 한국산림인증제도, 단체조직 및 산림경영인증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간 내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g) 내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결과 검토와 인증기관의 평가 그리고 사후심사 및 실행된 시정조치의 효과성 평가를 포함하여, 단체 구성원의 산림경영표준의 적합성 검토를 실행하여야 한다.
- h) 단체 구성원의 한국산림경영제도 적합성이 확인되고, 단체 조직의 규칙 등을 따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단체 조직은 단체의 새로운 구성원 가입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단체 조직은 적절한 장소에 단체 구성원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여야한다.
- i) 만일, 단체 구성원이 어떤 이유에서든 소유 토지를 판매하거나 단체로부터 탈퇴하고자 할 경우, 단체 조직은 이를 기록으로 유지하고 단체 구성원 명단에서 해당 구성원을 제외해야한다. 또한, 단체 조직은 단체 구성원이 한국

산림경영제도 등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는 요구한 기간 내에 단체조직이 요구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할 의지가 없는 경우, 해당 단체 구성원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탈퇴를 시키고 이를 기록으로 유지해야 한다.

j) 주기적인 내부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내부 심사는 평가와 독립적인 사람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내부 심사는 인증 또는 외부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점검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인증 요구사항에의 중대한 부적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샘플링 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단체 조직은 현장심사를 담당할 단체 관리자, 단체 구성원 및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현장심사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단체 조직은 단체 구성원에게 사전에 심사수검이 가능한지, 현장심사 지역에 접근이 가능한지, 현장심사를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체 조직과 선정된 단체 구성원은 인증기관 및 심사팀원들을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단체 조직은 현장심사 기간 동안 의사소통을 위해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a) 계획에 따른 심사 진행
- b) 심사 확인사항의 적절한 문서화
- c) 모든 분쟁의 적절한 해결
- d) 규정된 절차에 따른 심사 진행

(4) 단체 조직은 모든 단체 구성원이 법규 및 한국산림인증제도 그리고 산림경영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5) 단체 조직과 단체 구성원, 또는 단체 구성원들 간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예상되는 분쟁 및 불만 해결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6. 단체 구성원의 책임

6.1 일반 요구사항

- (1) 단체 구성원은 산림경영의 중요성과 한국산림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 (2) 단체 구성원은 단체조직의 단체 참여조건 및 모든 인증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상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2 단체 구성원의 기능과 책임

- (1) 산림경영표준과 기타 적용 가능한 산림인증제도의 요구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동의서를 단체 조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2) 단체 구성원은 한국산림경영제도의 요구사항을 실행하고 단체 조직이 정한 모든 정책, 규칙 및 절차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
- (3) 단체 조직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의 관련 데이터, 문서 또는 기타 정보, 산림 그리고 기타 시설로의 접근, 인증 및 내부 심사 또는 검토를 위해 모든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반적인 협조와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 (4) 단체 조직이 제공한 관련 시정 및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